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2. 19(금) 10:00

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도시안전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51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2. 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2. 8.

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(안 제3조)
- 나.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된 용어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(안 제9조, 안 제11조)
- 다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, 제75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 - 2) 입법예고: 2020. 12. 29. ~ 2021. 1. 18.(20일 이상)
 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 - 4) 규제사전심사: 별도시행
 - 5) 부패영향평가: 별도시행
 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시행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조례안 제출 배경

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재난 관리 기금의 운용에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·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-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, ‘기금의 용도’ 규정 정비 (안 제3조)
 - 조례안 제3조(기금의 용도)에 제1항과 제2항, 제3항을 각각 신설
 - 제1항 : 영 제74조제1호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 규정
 - 재난 예방·대응·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·연구 사업 등 9개 사항
 - 제2항 : 영 제74조제2호에서 지자체 외의 자가 소유·점유하는 시설의 안전조치 비용으로 지자체의 조례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의 범위 규정
 - 「자연재해 대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등 5개 사항
 - 제3항 :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외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,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
-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 정비 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 -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)제2항의 규정에 맞게 관련 내용 정비 (안 제9조제2항)

현행 조례	개정안 내용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현행 조례	개정안 내용
1. <u>기금의 조성계획</u> 2. <u>기금의 사용계획</u> 3. <u>기금의 운용계획</u> 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1. <u>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</u> 2. <u>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</u> <삭제> 3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제2항의 규정에 맞게 관련 내용 정비 (안 제9조제3항)

현행 조례	개정안 내용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<u>기금운영계획서</u> 는 <u>세입·세출예산안</u> 과 함께 매 <u>회계연도</u> 개시 40일전까지 <u>금천구의회</u> 에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	③ <u>구청장은</u> 제1항에 따라 수립된 <u>기금 운영계획안</u> 을 <u>회계연도</u> 마다 <u>세입·세출 예산안</u> 과 함께 <u>금천구의회</u> 에 <u>제출하여 의결을</u> 받아야 한다.

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, 2020.7.27.)에 맞게 관련 내용 정비 (안 제10조)

- 기금운용관 : 기금업무 담당 국장 ⇒ 기금업무 담당 과장

- 「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제2항의 규정에 맞게 관련 내용 정비 (안 제11조제2항)

현행 조례	개정안 내용
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<u>기금결산보고서</u> 는 <u>세입·세출결산서</u> 와 함께 <u>구의회</u> 에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	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<u>기금결산보고서</u> 는 <u>세입·세출결산서</u> 와 함께 <u>구의회</u> 에 <u>제출하여 의결을</u> 받아야 한다.

○ 상위 법령에 관련 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 (안 제11조)

- 현행 조례 제11조(기금의 결산) 제2항의 내용은 「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기본법」 등 상위 법령에 관련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 삭제 정비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

- 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12조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 - 가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
 - 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.
2.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
 - 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 - 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 - 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·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 - 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
제75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(이하 "최저적립액"이라 한다)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(이하 "의무예치금액"이라 한다)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.

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"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.

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